예 산 총 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583, 139,030	17,494,171
일반회계		576,560,113	17,296,803
특별회계		6,578,917	197,368
	기타특별회계	6,578,917	197,368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6,837	805
	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795,006	23,850
	수질개선특별회계	1,018,955	30,569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130,964	3,929
	주차장특별회계	4,607,155	138,215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- 제 4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- 제 5조 "명시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954,583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7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- 제 9 조 조직변경조례(안)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·운용할 수 있다
 - ※ 이전재원 표시

국비→국, 균형발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조정교부금→특, 지방소멸대응기금→대